

의안번호	제 68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68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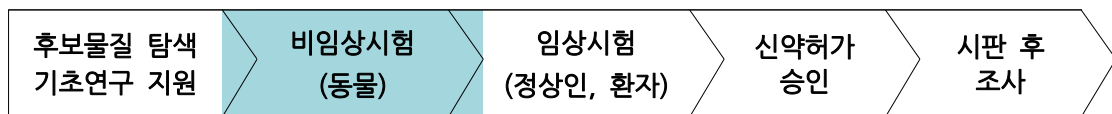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은 우리 도 수산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가공·판매·생산·전시 홍보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제325회 정례회) 받은 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 중 사업비가 30% 초과하여 변경 안을 제출한 건임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은 바이오 신약개발 과정의 핵심인 영장류 이용 비임상시험 전문기업인 (주)키프라임리서치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건으로, 첨단임상시험센터 등과 연계, 오송이 비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 원스탑 지원하는 바이오신약·백신 개발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사업임

※ 신약개발 흐름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 변경》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3. 1. ~ 2023. 12.
- 사업규모 : 부지 75,470.2㎡, 건물 11,564.74㎡(지하1층/지상2층)
 - 수산식품 연구개발실, 가공 및 판매장, 생산시설, 전시실 등
- 사 업 비 : 408억원(국비 191, 도비 128, 군비 89)
 - 건축비·기반조성 등 365억원, 부지매입 43억원
- 변경사유 : 당초 대비 사업비 30% 초과 증가 *당초사업비 216억원
 - 수산물직판장 등 건축물 신(증)축 추가 및 편입부지 증가

□ 재산의 처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일반재산 매각》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3번지 내
- 매각규모 : 부지 17,243.7㎡ 중 10,560㎡ 분할 매각
- 매각시기 : 2021년 상반기
- 재산가액 : 22억원(216.8천원/㎡, '21.6.30기준)
 - ※ 도와 청주시 1/2씩 지분 소유
- 매 수 자 : (주)키프라임리서치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17필지)	75,470.20	4,387,000				
	건물	1건(7개동)	11,564.74	36,478,000				
	기타							
1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1	2,460.3	143,014	2016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2	500	29,064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3	6,668.3	387,621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4	2,987.2	173,643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5	7,678.0	446,314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6	5,502.7	319,866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7	1,072.9	62,366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7-2	1,997.4	116,107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8	4,341.4	252,361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9	1,081.4	62,860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0	7,058.0	410,274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1	7,016.3	407,850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2	3,811.7	221,570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	12,711.4	738,900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4	3,438.3	199,865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5	5,356.4	311,362	2016	"		
토지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6	1,788.5	103,963	2016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1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0	541.72	800,000	201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	신축	경제성 여용연구동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0	1442.39	4,333,000	2018	"	"	사무연구동 관리동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6	1,275.12	2,500,000	2019	"	"	토종어류 연구동 등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5	988.2	2,969,000	2018	"	"	숙농동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5	2,019.86	5,370,000	2021	"	"	수산물직판장 수산물유통시설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3	3,497.45	10,506,000	2018	"	"	공장동
	건물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91	1,800	10,000,000	2023	"	"	민물고기 아쿠아 리움 등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2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4)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10,560	2,289,752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3	10,560	2,289,752	2021.6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재산 매각	(주)키프라임 리서치	
	건물							
	기타							
2	토지							
	토지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